

July 2, 2025

2025년 6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5년 6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3건)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 고
'25. 6.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 규정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6. 12. 31. 범위에서 연장 	대기
6. 18.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시행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규정 - 등록·변경등록 및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개선 	기타
6.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소음 인증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대기
6. 26.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값 전송 시 추가 제출자료인 폐기물 적재사진을 계량 당시 차량 및 계량시설 사진으로 대체 - 행정기관 계량시설의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 제출은 제외 	폐기물

6. 12. (7.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 -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및 단가 조정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등을 명확화 	대기
6. 11.	(보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어 정비 - 최신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성과 반영하여 보의 제원 등을 현행화 	수질
6. 11.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무부하 검사방법을 따로 명시 - 수시점검 실적관리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으로 단일화하며, 용어 등 정비 	대기
6. 11.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무부하 검사방법을 따로 명시 - 운행차 전문정비업자 지도·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규정 - 검사장비 용어를 일제 정비 	대기
6. 5.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 4단계 시설 준공('23. 10월, 30,000m³/일)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의 설치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 -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수질항목 개정사항(페놀→페놀류함유량)을 반영 	수질
6. 4. (9. 5.)	(제작자동차 시험 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측정을 위해 필요한 예비운전,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 측정방법을 개선 	대기
6. 2.	(한강, 낙동강 상·중류, 낙동강 하류, 금강, 영산강·임진강)유역 폐수배출 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 	수질

	시설 지정)		
6. 1.	(공공 재활용기반 시설 설치·운영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경우의 준수사항을 반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방지기준을 강화 	폐기물
5. 30.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부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환경 관련 상위법령을 반영한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명확화 - 입찰제도 관련 현장여건 반영 등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를 계기로 폐지·제정을 통해 훈령 재정비 	기타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25건)

예고 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 내용	비고
'25. 6. 25. ~ 8.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목적의 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대상을 규정 -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규정 -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개정 	자연
6. 25. ~ 8.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 -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와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출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개정 	자연
6. 20.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 대상 업종 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통합허가 	공통

7. 30.	법률 시행령	적용 시기를 규정	
6. 20. ~ 7.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간 합병, 시설 인수로 배출시설 등이 추가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 후 1년 이내 변경허가를 받도록 완화 - 통합허가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시 기존 허가변경허가 때 부여된 허가배출기준을 2029년까지 유지 -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은 위탁운영사의 고용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공통
6. 18. ~ 7. 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별로 구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환경기술의 범위를 규정 - 인공지능 및 사물시스템 등과 결합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로 규정 - 녹색전환 보증계정 및 투자펀드 출자 등 세부사항과 규정을 마련 - 녹색기업 지정취소 기준 보완 및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원 사업 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보완 	기타
6. 18. ~ 7. 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자료제출 시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 환경표지 등 인증의 무단 사용된 제품과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등 절차를 규정 -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 기준을 보완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히 개정 	기타
6. 16. ~ 7.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를 개선 - 지방환경관서의 장애계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를 정비 - 행정처분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6. 12. ~ 7. 24.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및 유효기간 등 관련 인용조문 현행화 -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는 하천수 사용 실태 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신고 서식을 개선 	수질
6. 12. ~ 7.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 대상을 명확화 -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을 개선 	자연
6. 12. ~ 7.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해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 	자연
6. 10. ~ 7.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해 '완구류'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하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kg당 343원으로 설정 	폐기물
6. 9. ~ 7. 2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도록 주체를 변경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 및 미실 시 사유를 마련 -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을 마련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확대 	토양
6. 4. ~ 7.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적용하는 부하검사 방 법을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속도제어방식으로 개선 	대기

		- 자동차 검사장까지의 이동사항을 반영한 검사 예열조건을 완화	
5. 30. ~ 7.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공통
6. 30. ~ 7. 21.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여 고시로 제정	폐기물
6. 27. ~ 7. 1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고시·지침을 통·폐합 -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과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소량 산정 방법을 재정비	화학
6. 19. ~ 7. 15.	(먹는물수질공정 시험기준고시)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분석기기 및 보정 내용을 통일·수정 - 시험방법의 정도보증, 정도관리 등 내용을 개정 - 시료채취와 보존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수질
6. 19. ~ 7. 14.	(폐기물공정시험 기준고시)	- 시료 보존방법, 배양조건 등 세부 설명을 추가하여 불확실한 표현을 명확화 - 고형물 비율 계산식 수정 및 표준화 지침에 따른 숫자 표기 등 세부사항을 수정	폐기물
6. 19. ~ 7.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고시를 통·폐합 -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을 마련 -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	화학
6. 18. ~ 7. 7.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고시를 통·폐합 -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을 마련 -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	화학

	관한 고시)	비사항을 보완	
6. 18. ~ 7. 7.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방법을 계획과 실적으로 구분 - 평가 방법을 정성에서 정량으로 개선 - 처리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평가서의 서식을 개선 	폐기물
6. 16. ~ 7. 7.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체 구분 시 근로자를 실내/실외로 세분화하고 기타를 추가 - 토양오염물질 배경농도, 인체 노출 관련 계수, 경로별 산식, 인체노출량 산정인자값 등을 최신화 - 노출기간, 수준-건조 전환계수 등을 신설 	토양
6. 12. ~ 7. 3.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하천수 사용의 인용조문을 현행화 - 일시적 작업용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적용 	수질
6. 12. ~ 6. 2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부검사방법을 개선·보완 - 기존 멸균·분쇄시설에서 열관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도 멸균능력 확인 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열분해시설 설치기준은 유화시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화 	폐기물
6. 11. ~ 6. 28.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 -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화학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발의일자 (발의자)	법령명	주요 내용	진행 상황
'25. 6.27. (정혜경의원 등 12명)	환경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 -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은 공개하도록 규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 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규정 -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 	위원회 회부 (6. 30.)
6.26. (정혜경의원 등 13명)	환경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 	위원회 회부 (6. 27.)
6.25. (정혜경의원 등 11명)	환경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위원회 회부 (6. 26.)
6.24. (이학영의원 등 10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어,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개정 	위원회 회부 (6. 25.)
6.20. (이학영의원 등 11명)	하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 	위원회 회부 (6. 23.)

<p>6. 20. (이학영의원 등 11명)</p>	<p>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 -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 	<p>위원회 회부 (6. 23.)</p>
<p>6. 19. (이미자의원 등 10명)</p>	<p>물환경보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제거·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 	<p>위원회 회부 (6.20)</p>
<p>6. 16. (김위상의원 등 10명)</p>	<p>화학물질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 	<p>위원회 회부 (6. 17.)</p>
<p>6. 16. (김소희의원 등 17명)</p>	<p>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과잉 제재를 방지 	<p>위원회 회부 (6. 17.)</p>
<p>6. 13. (전용기의원 등 10명)</p>	<p>대기환경보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 -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p>위원회 회부 (6. 16.)</p>
<p>6. 13. (정희용의원 등 12명)</p>	<p>환경영향평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 	<p>위원회 회부 (6. 16.)</p>

<p>6. 12. (한정애의원 등 11명)</p>	<p>하수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중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중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중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 - 신중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 	<p>위원회 회부 (6. 13.)</p>
<p>6. 12. (한정애의원 등 13명)</p>	<p>물환경보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중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중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 	<p>위원회 회부 (6. 13)</p>
<p>6. 12. (전재수의원 등 11명)</p>	<p>대기환경보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 	<p>위원회 회부 (6. 13.)</p>
<p>6. 11. (김위상의원 등 10명)</p>	<p>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p>위원회 회부 (6. 12.)</p>
<p>6. 11. (김형동의원 등 10명)</p>	<p>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 	<p>위원회 회부 (6. 12.)</p>

II.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환경공약 주요 내용

1. 비전과 정책 과제

1) 3대 비전

(1) 회복

-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및 방송 공공성 회복 등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실현
-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2) 성장

- 민생위기 극복, 경제 대도약으로 성장기반 구축
-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공정한 경제구조 구축
- 기후위기 대응
- 세종 행정수도 이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등 국가 균형발전 추진

(3) 행복

-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 부채 완화
- 노동존중 및 노동권리 보장
-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응
- 초등학생 돌봄, 어르신 돌봄
-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2) 5대 강국 목표

- K-이니셔티브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세계 문명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 통합과 상생가치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2. 분야별 환경 주요 공약

1) 기후위기 대응

① 실효적 탄소중립정책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예비타당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시 탄소저감효과 평가
-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대응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33) 유치
- 기후 위기로 인하 홍수·가뭄에 선제적 대응
- 지하수댐 건설, 샌드댐 설치 등 추진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②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 발전 도모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및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의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
- 다탄소 배출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추진
- 예산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③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임업·산촌 탄소중립

- 친환경 유기농, 순환 농업, 탄소직불제 도입
- 백년숲 산림, 임업직불제, 산림공익가치 직불제, 산지은행 도입 등
- 임도 개선, 수종 전환 등 탄소흡수력 큰 건강한 산림 조성

④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 탄소감축 지원사업 세제혜택 등

⑤ 기후위기 관련 남북 협력 강화

⑥ 기후취약품목 지정,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2) 재생에너지 전환

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및 기업의 역량 강화
- 태양광 이격거리 제도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 개선
-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②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 전력, 용수, 폐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지원 강화

③ 햇빛연금 지급

-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가 햇빛연금 지급
- 영농에너지 자립 추진, 농식품 분야에도 RE100 단계적 도입

3) ESG 지원 강화

① ESG 기업경영 혁신 지원

- 국민펀드 등을 활용한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ESG 공시·측정·평가 등 객관적 ESG 평가체계 구축
-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기후공시 강화하는 Say on Climate 순차적 도입

②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지원법(가칭) 제정

③ 중소기업 전분야 ESG 맞춤형 지원 및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4) 미세먼지

- 통합허가사업장 2029년 미세먼지 배출량 $13\mu\text{g}/\text{m}^3$ 달성,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강화
- 친환경 교통·수송 전환 추진, 노후화물차 저감장치, VOCs 중점관리

5) 화학물질 관리

- 가습기살균제 같은 화학참사 발견, 대응, 치료 지원체계 마련
- 발암물질, 생식동성물질, 환경호르몬 같은 독성물질 신속 퇴출

- 산업단지 주변 독성물질 확인과 배출물질 관리·감독 강화
-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적 정책 추진
- 불법유통 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시설 관리 강화

6) 기타

①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및 대행비 산정 현실화

- 환경영향평가 신기술 도입으로 접근성·신뢰성·객관성 제고

②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 확대, 국가 차원 생물안보 강화
- 국가침입외래종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생태계서비스 현실적 보상, 습지 탄소흡수원 국제인증 추진
- 야생동물 로드킬 저감
- 곰사육 농장 폐쇄
- 자연생태분야 정부 공조

③ 동물학대자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역할 강화
-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④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강화

⑤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

⑥ 수도권매립지 2030년 감량 50%, 실질재활용 70% 등 사용 종료 대책 마련

⑦ 친환경 포장재, 다회용기 사용 등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 마련

⑧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

- 보 해제 결정 원상태 회복 및 4대강보 전면 개방
- 신규댐 설치 폐기, 4대강 유입 오염물질 대폭 차단, 인과 질소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및 수질측정센터 4대강 전체 확대

3. 대통령실 직제 및 국정기획위원회 중 환경 관련 직제

1) 대통령실 직제(3실장, 7수석, 3차장)

- 환경분야는 AI미래수석실(하정우 수석) 산하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신설 (이유진 비서관)

2) 국정기획위원회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25. 6.16.부터 60일간 활동)
- 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총 7개분과로 구성
- **사회2분과에서 교육, 문화체육, 방송통신, 고용, 환경 업무 추진**
- **환경부 전문위원으로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파견**

III. 환경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25. 6. 27.	고위공무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부 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퇴직
6. 25.	서기관 김재현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서기관 유성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서기관 조유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장현정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UNESCAP 파견근무

6. 20.	고위공무원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물관리정책실장
	고위공무원 오일영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6. 4.	고위공무원 이창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환경부
	고위공무원 진명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환경부
6. 2.	서기관 안지애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박상철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서기관 원경하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과학기술서기관 이주현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휴직

관련 구성원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구도형

변호사

T 02.3404.0857

E dohyung.koo@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 (New York)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